

임원선거규정

(개정 2023. 12. 18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정관 제11조에 근거하여 본 연맹의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 구성) 이 규정은 아래 임원 선출에 대해 적용된다.

1. 총재
2. 부총재, 직선이사 및 감사
3. 중앙치프커미셔너(중앙훈육위원장), 국제커미셔너(국제훈육위원장), 중앙훈련원장(훈련커미셔너)

제3조(위원회 설치) ① 이사회는 제2조의 1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임원의 임기만료 전 3개월 이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본 연맹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
1. 위원장 1인 (부총재)
2. 부위원장 1인
3. 위 원 7인
4. 간 사 1인

③ 간사는 직제에 의하여 이사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.

제4조(위원회 임무) ① 위원회는 제2조 1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임원 선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다음의 업무를 심의하고 처리한다.

1. 임원 선출 공모
2. 후보자 접수
3. 투명하고 공정한 선출계획 수립
4. 후보자의 제출서류 검토 및 심의를 통한 적격여부 심사
5. 후보자 대면 및 현지확인
6. 단일후보 선정
7. 그 밖에 임원 선출에 관련된 제반 업무

② 위원은 위원회 활동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5조(임원의 선출방식)

- ① 제2조 1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임원은 공모를 통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심사하여 단일후보를 추천하며, 이사회에 제청으로 전국총회에서 선출한다.
- ②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임원은 전국총회에서 선출한다.

제6조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부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)

-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후보자의 모집)

- ① 위원회는 제2조 1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임원의 임기만료 3개월 이내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.
- ② 임원 후보자의 모집은 지방·특수연맹 안내와 홈페이지 안내 등을 통하여 모집하되, 구체적인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9조(심사절차 및 방법) ① 위원회는 공모자를 대상으로 제출서류를 심사하고, 서류가 허위나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 그리고 부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후보자에서 제외한다.

② 위원회는 아래 사항에 준하여 후보자 심사를 실시한다.

구분	임원 후보 기준	심사방법
제2조 1항의 임원	1. 스카우트 운동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2.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자	-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
제2조 3항의 임원	3. 연맹의 혁신 능력과 전략적 리더십을 갖춘 자 4. 사회적 덕망과 투철한 윤리의식이 있는 자 5. 정관 시행세칙 제5조의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자	- 제출서류 심사 - 영상 심사 - (비)대면 심사 (질의응답)

(임원선거규정)

제10조(제출서류) ① 임원후보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임원후보 신청서
2. 이력서
3. 스카우트활동 주요 업적 및 경력소개서
4. 스카우트 운동 발전방향에 대한 직무수행 소견서 및 영상자료
5. 임원권한 이행확약서
6. 입후보자 각서

② 위원회는 적격자 선정을 위해 추가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1조(임원후보자의 결격사유)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-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
- ② 본 연맹의 명예회의에서 징계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(전국총회일 기준)

제12조(위원회 구성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 구성원은 배우자, 자신과 배우자의 각 5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가 된 때에는 위원회에서 제척된다.

② 후보자는 위원회 구성원에게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 구성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위원을 회피할 수 있다.

④ 제2조 1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임원 후보자는 본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.

제13조(간사)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
2.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
3. 기타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재정 시행한다.